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누하동 분홍 달맞이꽃〉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 이호재 평생회원의 명복을 빕니다
- 8 • 특별기고 | 신뢰출산 제도에 대한 소개
- 24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㉔
- 26 • 가정폭력상담실
- 28 • 어떻게 할까요
- 31 • 좋은 책
우주는 푸른 용
- 32 • 결혼과 인생(212) 영화 이야기
아무도 모른다 _ 김용언
-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 36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심사숙고하여 얻은 신중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소금장수와 우산장수 이렇게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소금장수 아들 걱정애 조바심을 내고 날씨가 좋으면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하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사의 한 단면을 담고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 혹은 한 가정의 사안이고 크게 보면 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정책 담당자는 자식들 걱정애 눈물짓고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저는 우리 사회를 보며 이러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역전문가들은 입국제한을 비롯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나아가 단기간이라도 적극적인 봉쇄를 통해 감염병 전파를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방역 뿐 아니라 경제와 교육 등 사회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제한과 봉쇄가 정답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현실에서 체감한 것은 특히 광복절 이후 제2의 코로나 사태 파동이 예상되며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2.5단계의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을 때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이는 곧 가정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것을 시시각각 보아야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를 맞으며 우리 사회 전체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흔히들 전쟁 때에도 수업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에서도 학교는 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각급학교에 처음 입학한 학생들은 2학기가 되어서야 가끔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채 얼굴도 익히기 전에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사회적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가정에서는 가족구성원 대부분이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으로 집 안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고 자녀들은 학교나 돌봄 시설에 가지 못하는데 부모들은 직장이나 일터에 나가야하기에 돌봄에 공백이 생겨 힘들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이것이 부부 간 혹은 가족구성원 간 갈등과 마찰로 이어져 가족해체의 고통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상담소 또한 1956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상담 기간 모든 상담과 프로그램을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정문제의 특성상 대면상담이 최선인데 가정문제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에서 상담조차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 안타까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우리 사회는 말 그대로 소금장수와 우산장수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처음인 상황이어서 국가와 정부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는 있으나 국가와 정부가 소금장수, 우산장수의 어머니처럼 주저앉아 울고 환경만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정책은 필요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오락가락 했던 통신비지원의 경우 역시 그것이 어떻게 왜 꼭 필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을까요? 문제는 행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이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부수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때 그 때 신속하게 유연함과 민첩함을 보여주면서 그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했다면 국민들은 이 힘든 시기에 정부를 더욱 신뢰하며 버텨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정책이나 정책 방향 자체를 철학도 방향성도 없이 여론이나 언론의 추이를 보며 임기응변식으로 진행해서는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입안하고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펴 나가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야말로 사회 전반적 흐름을 보며 진정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실행에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라는 점을 명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이 스스로 주어진 규칙을 지키고 사회적 합의에 우선적으로 협력한다면 더불어 이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사회에서 사회적 봉쇄와 엄격한 거리두기 등으로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한 편에서는 배달이 증가하면서 물류 노동자들의 과로사나 사고사가 증가하기도 하고 배달 음식이나 포장에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현명하고 신중한 대책과 국민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해 낼 때 우리가 진정 이 어려운 시기 또한 잘 극복해 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부디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기를, 다가오는 가을, 겨울 더욱 잘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서로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특 집

이효재 평생회원의 명복을 빕니다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

상담소의 평생회원, 건축회원으로 함께하며
여성백인회관 개관 기념 강연 통해 무료결혼식 사업의 계기 마련
상담소의 <가정현장> 현장위원으로 창립 30주년도 함께 해

“이태영 선생님은 대선배로서 나의 삶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우리나라 1세대 여성운동가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지난 4일 오후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나는 이태영 선생님이 전문 지식인으로서 여성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지도력으로 사회 민주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로써 나는 1960~70년대에 YWCA에 참여하여 사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YWCA는 내가 참여한 첫 여성단체였다. 이를 시작으로 여성운동가로서의 실천적 삶에 뜻을 두게 되었으며, 여성들의 삶을 중심으로 한 가족사회학적 연구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태영 선생님은 대선배로서 나의 삶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듯 이효재 교수는 사회활동의 시작부터 상담소와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박사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상담소의 평생회원이자 건축회원으로 상담소와 함께 해 왔다.

이효재 교수는 1977년 10월 5일 여성백인회관 개관 기념 강연 <오늘의 한국가정을 진단한다>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본 오늘의 가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담소 무료결혼식 사업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979년 6월 9일에는 세계 아동의 해를 맞아 상담소와 한국가족학회가 공동개최한 세미나 <아동과 인권>에서 ‘사회구조와 아동’을 발표하였다. 이후에도 상담소와 이효재 교수는 한국사회와 여성, 가족

문제를 논의의 축으로 하여 깊은 관계를 지속해 왔다.

상담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1986년에는 5월 14일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의 바람직한 가정상을 모색한다>에서 이효재 교수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가정’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10월 7일에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상담소가 발표한 <가정현장>의 현장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장의 작성 및 선포에 함께 하였고, 11월 <가정상담>에 ‘여성 과 민주화’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였다.

이어 1991년 11월과 1993년 4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서울 토론회와 오사카 집회에 이태영 박사와 함께 참석하여 분단 상황에서 남북 여성의 교류와 아시아의 평화 등에 관해 이태영 박사와 함께 해 왔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이태영 선생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상담소에서 발행한 추모문집 『사랑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다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 이태영』에 ‘선생님의 깊은 열정과 인간 사랑’을 기고하여 상담소와 함께 이태영 박사를 추모 하였다.

이렇듯 평생을 상담소와 함께 해 온 이효재 교수는 1924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이화여대에서 영문학을 수료하고 미국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뒤 귀국해 이화여대에 사회학과를 창설하고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울러 여성운동가로 평생

을 헌신했다. 또한 학문적으로 가족사회학과 분단사회학을 개척하여 여성과 노동, 분단이 여성과 가족, 사회구조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적극 주장하였다. 정년퇴임 이후 1997년부터는 경상남도 진해에서 부친이 세운 경신사회복지재단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을 맡아 연구와 지역사회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효재 평생회원의 명복을 빕니다.



▲ 1977년 10월 5일 여성백인회관 개관 기념 강연 <오늘의 한국가정을 진단한다>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본 오늘의 가정' 주제발표를 통해 상담소 무료결혼식 사업의 계기 마련



▲ 1991년 11월과 1993년 4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서울 토론회와 오사가 집회에 이태영 박사와 함께 참석 ▲



▲ 1986년 10월 7일 상담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가정헌장>을 선포하는 이효재 교수



◀ 1977년 10월부터 시작된 상담소의 무료결혼식

▶ 1986년 5월 14일 상담소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의 바람직한 가정상을 모색한다>에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가정'을 발표





신뢰출산 제도에 대한 소개*

현 소 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우리나라는 한때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을 널리 허용하였다. 하지만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과 2013년 「민법」 개정¹⁾에 따른 입양허가제 도입 후 이와 같은 관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입양허가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출생신고의 강제는 모든 아동에게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UN 아동권리협약²⁾ 제7조와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양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던 2011년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³⁾에 따른 것으로서 규범적으로는 지극히 마땅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간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관

행에 익숙해져 있었던 입양기관과 일부 비혼모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출생신고의 강제에 의해 비혼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외 자녀의 출생 사실이 기록되고, 각종의 증명서를 통해 그 출생 사실이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며,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비혼모들로 하여금 입양 대신 아동 유기를 선택하도록 하여 아동의 생명권 침해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때마침 한 종교단체에 의해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아동 유기의 책임이 「입양특례법」에 있는지 또는 베이비박스에 있는지를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멀지 않은 시기에 한 번 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혼부, 조부모, 외국인 등과

* 본 원고는 필자가 2017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인 『아동유기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중 제3장 부분을 발췌 및 수정한 것이다. 위 보고서가 제출된 후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익명출산 및 신뢰출산에 관한 각종의 통계가 새롭게 발표되었으나, 본고에는 그 통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1) 위 협약의 공식 명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우리나라는 1990.11.20. 위 협약을 비준하였다.

2) CRC/C/KOR/CO/3-4, paras.36-37.

같이 현행의 출생신고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집단의 수가 적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거나, 적어도 국가가 모든 아동에 대해 제대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³⁾ UN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2019년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9. 5. 23.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출생통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도 출생통보제의 신속한 도입을 권고하였다.⁴⁾

보편적 출생등록제 내지 출생통보제의 도입 과정에서 자녀의 출산 사실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모(母)의 사생활 보호는 다시 한번 문제될 수밖에 없다. 출생등록제가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도입이 모의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거나, 아동유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도록 미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제 내지 출생통보제와 함께 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이 중 특히 프랑스의 익명출산 제도와 독일의 신뢰출산 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II. 프랑스

1. 연혁

프랑스는 16세기부터 수도원이나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아기상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아기상자’란 수도원이나 요양원의 벽에 회전문 형태의 상자를 설치하고, 모가 벽 외부에서 자녀를 상자에 넣은 후 종을 울리면 벽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상자를 회전시켜 자녀를 꺼내 보호하는 방식을 말한다.⁵⁾ 프랑스는 그 유구한 전통만큼이나 익명출산에 관한 법제정과 개정의 역사도 오래되었다. 익명출산 제도에 관한 최초의 입법은 1793.6.28.자 데크레(décret)였다고 한다. 위 데크레는 카톨릭의 정신에 따라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모(母)가 특정한 장소에서 비밀로 출산하는 것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출산비용 및 출산 후 모(母)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⁶⁾

익명출산과 관련된 두 번째 입법은 1904.6.27.자 법률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1804년 제정된 프랑스 민법에 의해 혼인의 출생자가 생부를 상대로 재판상 인지를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미혼모들이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급증하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영유아포기사무소(bureau ouvert)’를 설치하고, 위 기관에 아이를 익명으로 위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포기

3) 김상원/김희진,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출생등록 제도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 제65권(2019), 57-88면; 서종희, “출생신고 및 등록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내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연세법학 제27호(2016), 39-65면; 소라미,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家族法研究 第30卷 3號(2016), 481-496면; 송진성,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제1호(2018), 217-246면; 송효진, “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안 -의료기관 연계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家族法研究 第31卷 2號(2017), 169-198면; 최성경,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및 관련 법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한양법학 제30권 제2집(2019), 161-194면; 현소혜,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 家族法研究 第32卷 2號(2018), 50-54면 등 참조.

4) 위 권고문 결의 내용은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57145>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일자 2020. 9. 15.).

5) 이에 대해 자세히는 김상용, “베이비박스과 익명의 출산”, 法學研究 第54卷 第4號(2013), 330면; 안문희, “프랑스법의 익명출산제도”, 中央法學 제15집 제4호(2013), 220면 참조.

6) 서종희, “익명출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27권 2호(2014), 83면; 안문희(2013), 220면; 이지은, “프랑스 비밀출산제도(l' accouchement secret)의 현황”, 유럽연구 제33권 1호(2015), 178면.

사무소에 아이를 위탁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면서 본인들의 익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⁷⁾ 이로써 수도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비밀리에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던 1793.6.28.자 데크레는 폐지되고, 아기상자의 운영 기능이 '영유아포기사무소'라는 일종의 공적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익명출산과 관련된 세 번째 입법은 1941.9.2.자 법률⁸⁾이다. 위 법률은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모(母)와 아이에 관한 정보를 숨길 수 있도록 보장하였는데, 이는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아이를 임신한 프랑스 여성들의 두려움 및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위 법률은 익명출산을 원하는 모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각 한 달간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입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모(母)와 태아의 건강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母)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철회권도 부여하였다.¹⁰⁾ 위 법률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1953년 잠시 폐지되었으나, 1959년 다시 부활하였고,¹¹⁾ 「가족 및 사회활동법」(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이하 'CASF'라고 한다.)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였다.

1993년 익명출산 제도는 단순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을 넘어서 친자관계 성립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정립되었다. 입법자가 1993.1.8. 프랑스 민법을 개정하여 “모는 출

산시에 입원사실 및 신분의 비밀보장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익명출산을 선택한 모에 대해서 인지청구를 하는 것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¹²⁾ 하지만 위와 같은 민법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익명출산을 통해 출생한 자녀들의 혈통을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¹³⁾ 이에 프랑스는 2002.1.22.자 법률(이른바 'Royal법')에 의해 CASF를 개정하여 익명출산을 선택한 모(母)가 동의한 경우에는 모(母)에 관한 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녀의 정보접근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다.¹⁴⁾

그 후 유럽인권법원은 *Odievre v. France* 사건에서 자녀에게 자신의 친생부모에 관한 인적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생부모에게도 사생활 및 가족생활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점, 익명출산에 의해 태어난 자녀는 적어도 모(母)의 인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뿌리에 관한 접근이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니라는 점, 프랑스 법에 따르면 친생모가 동의한 경우에는 익명성 철회가 가능하므로 모(母)의 이익과 자녀의 이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가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선언하였다.¹⁵⁾

위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이 있는 다음 익명출산에 관한

7) 김상용(2013), 330-331면; 안문희(2013), 214, 220면; 이지은(2015), 178면. 안문희(2013), 220면은 '영유아포기사무소'를 '열린 사무소'라고 직역하고 있다.

8) La loi du 2 septembre 1941 sur la protection de la naissance.

9) 김상용(2013), 331면; 서종희(2014), 83면.

10) 안문희(2013), 221면; 이지은(2015), 178면.

11) 안문희(2013), 221면.

12) Loi no 93-22 du 8 janvier 1993 Art. 341-1. 서종희(2014), 83면은 1939년 이미 익명출산 제도가 민법에 편입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근거를 알 수 없다.

13) 익명출산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대해 자세히는 이지은(2015), 180-182면 참조.

14) 서종희(2014), 83, 86-87면. 2002년 개정된 CASF의 조문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74069&dateTexte=20141106> (최종방문일자 2020. 9. 15.).

15) 유럽인권법원 2003.2.13.자 판결(*Odievre v. France*). 위 판결을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2014), 63-65면; 안문희(2013), 215-219면 참조.

민법 조문은 2005.7.4.자 명령¹⁶⁾에 의해 그 위치가 민법 제 341조의1에서 제326조로 이동되었으며, 익명출산의 구체적인 절차와 익명출산으로 출생한 자녀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CASF의 일부 조문도 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현행법의 태도에 따른 익명출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¹⁷⁾

2. 익명출산의 주제

프랑스 민법 제326조에 따라 모(母)는 출산 시에 입원사실 및 신분의 비밀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자녀를 포태한 모(母)라면 누구나 익명출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혼자의 경우에도 익명출산이 가능하다. 기혼자가 익명출산을 선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비밀이 보장된다(CASF 제222조의6). 행위능력이 제한된 미성년자라도 익명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 익명출산 선택시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¹⁸⁾

익명출산을 선택한 모(母)는 임신거소와 출산에 관한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때 출산 및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아동복지서비스(L' aide sociale à l' enfance, 이하 ASE라고 한다.)에서 지출한다(CASF 제222조의6 제2항 및 제3항). 이때 ASE란 아동보호를 위해 각 도(departement)마다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한다.¹⁹⁾

196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익명출산을 선택한 모의 숫자는 매년 약 2,000명가량에 달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로

는 매년 약 600명 전후의 모가 익명출산을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²⁰⁾ 2010년의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익명출산을 선택한 모(母) 중 50% 이상이 25세 이하였으며, 73%는 친부와 동거하지 않고 있었고, 70%는 임신사실을 포태 16주 이후에 인지하였다. 따라서 익명출산의 주된 이용집단은 '미처 낙태를 하지 못한 어린 미혼모' 인 것으로 추정된다.²¹⁾ 특히 친생부와의 결별이나 어린 나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익명출산 동기로 밝혀졌다.²²⁾

3. 익명출산의 절차

익명출산을 요구한 모(母)에게는 어떠한 신분증이나 조사도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모(母)로부터 익명출산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모(母)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CASF 제222조의6).²³⁾

- 자녀를 포기하는 행위의 효과
-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의 출신과 과거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의 중요성
- 모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봉인된 봉투 속에 남길 수 있다는 점
- 모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모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CASF 제 147조의6에 따라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정보의 내용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점
- 자녀 양육을 원하는 경우 부모에게 제공되는 각종의 사

16) Ordonnance n° 2005-759 du 4 juillet 2005 portant réforme de la filiation.

17) 프랑스의 현행 익명출산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김상용(2013); 안문희(2013); 서종희,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프랑스의 입양절차”, 家族法研究 第28卷 第3號(2014)(이하 ‘서종희(2014a)’로 인용한다.); 서종희(2014); 이지은(2015) 참조.

18) 서종희(2014), 85면; 서종희(2014a), 84-85면.

19) 이지은(2015), 174면 각주 11) 참조. 안문희(2013), 225면은 ASE를 ‘아동복지사회봉사단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서종희(2014), 85면은 ‘아동사회복지조기관’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20) 서종희(2014), 83면; 이지은(2015), 179면.

21) 이지은(2015), 189-193면.

22) 이지은(2015), 194-195면.

23)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는 안문희(2013), 224-225면; 이지은(2015), 186면.

회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

- 익명출산 후 ASE에서 보호 중인 자녀를 되찾아올 수 있는 기간과 조건

의료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모(母)가 익명출산을 선택하면,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고지한 전문가에 의해 익명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서류가 작성된다. 이 서류에는 모(母)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정보와 모(母)의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 중 모(母)가 선택한 정보가 기재되는데, ① 모(母)가 아이를 위해 지어준 이름과 모(母)가 이를 지었다는 사실, ② 아이의 성별, ③ 출생 날짜와 시간 및 장소와 같이 모(母)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정보는 봉인된 봉투의 바깥쪽에 기재한다. 반면 모(母)의 성명, 주소 등과 같이 모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들 및 부모의 건강상태·아이의 혈통·아이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아동이 아동보호시설에 가게 된 이유 등과 같이 아이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모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이 없는 비식별정보들 중 모(母)가 제공한 정보들은 그 기록을 봉투에 넣고 봉인한다. 물론 익명출산 후에도 모(母)는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²⁴⁾

봉인된 봉투는 「개인의 혈통에 대한 접근을 위한 국가평의회」(Conseil national d'accès aux origines personnelles, 이하 'CNAOP' 라고 한다.)²⁵⁾에 전달되며, 평의회 의장이 이를 보관한다. CNAOP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친생모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 전달 및 보관하는 절차를 총괄하는데²⁶⁾, 2016년 CNAOP의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모(母)가 자

발적으로 자신의 인적 정보 공개에 동의하면서 이를 제공한 건수는 2016년 한 해 동안 46건에 불과하였다고 한다.²⁷⁾

4. 익명출산으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본래 프랑스에서는 자녀 출산 후 5일 내에 부(父)가 출생지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프랑스민법 제55조), 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외과의, 조산원, 의료기관 관계자 또는 출산을 보조한 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56조). 하지만 익명출산의 경우에는 부모에 갈음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사회부조기관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출생증서의 작성을 신청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에 따라 출생증서에 해당하는 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프랑스민법 제58조 제4항).

출생증서에는 부모에 관한 사항이 함께 기재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익명출산에 의해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오로지 아이의 성별과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접수연월일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성명만이 기재될 뿐이며, 모(母)는 X라고만 기재된다.²⁸⁾ 다만, 아이의 성명의 경우에는, 익명출산을 선택한 모(母)가 미리 아이에게 부여되기를 원하는 이름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 이름에 따라, 그 이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선택한 세 개의 이름에 따라 기재된다(프랑스민법 제57조제2항).

24) 이러한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서종희(2014), 84-86면; 서종희(2014a), 85면.

25) 서종희(2014), 86면은 이를 '양자의 출산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평의회' 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안문희(2013), 223면은 '익명출산과 관련한 인적 사항의 보관,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국가심의회', 이지은(2015), 179면은 '출생 근원예의 접근을 위한 국가심의회' 라고 번역하고 있다.

26) Instruction du 4 avril 2016 - Protocole d'accord et guide de bonnes pratiques 참조.

위 자료는 CNAOP 홈페이지 <http://www.cnaop.gouv.fr/> 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 2020. 9. 15.).

27) Conseil National pour l'Accès aux Origines Personnelles, Rapport d'activité 2016, 35면.

위 자료는 CNAOP 홈페이지 <http://www.cnaop.gouv.fr/> 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 2020. 9. 15.).

28)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랑스에서 익명출산은 'X라는 이름의 출산' (accouchement sous X)이라고 일컬어진다. 이지은(2015), 174면.

5. 익명출산을 통해 출생한 자녀의 보호

익명출산으로 출생한 아이는 ASE 또는 국가로부터 인가 받은 입양기관(Organisme autorisé pour l'adoption)으로 보내진다.²⁹⁾ 이때 ASE에 아이를 인도한 자는 ① 입양지원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② 국가피후견인 제도에 관한 규정 및 ③ 그가 아이를 되찾을 수 있는 기간과 조건 등에 관한 고지를 받고, 이를 숙지하였다는 취지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CASF 제224-5조 제1항 및 제2항). 조서작성 시점부터 아이는 잠정적인 국가피후견인으로 취급되어 그 시점부터 시장(préfet)이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CASF 제224조의6 제1항),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지방의회의장이 그 아이에 대해 '국가피후견인 자격 승인 결정'(arrêté d'admission en qualité de pupilles de l'État)을 내리게 된다.³⁰⁾

위 결정에 따라 아이가 국가피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면, 이때부터 아이에 대한 입양동의권은 부모가 아닌 후견인이 행사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국가피후견인 자격 승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30일 내에 소송으로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CASF 제224조의8 제1항). 위 기간 내에 불복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모 기타 어떠한 이해관계인이라도 추후 입양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판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³¹⁾ 국가피후견인 자격 승인 결정의 확정에 의해 익명출산을 한 모는 입양절차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상실하는 셈이다. 다만, 자녀가 익

명출산을 통해 출생하기 전에 미리 생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생부가 입양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프랑스 파기원의 입장이다.³²⁾

국가피후견인 자격 승인 결정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한 입양계획을 세우고, 국가피후견인을 위한 친족회(conseil de famille)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CASF 제225조의1 제1항). 후견인은 특히 피후견인을 입양 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입양을 보내는 경우 완전입양과 단순입양 중 어느 쪽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적합한지, 누구를 양부모로 삼을 것인지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입양계획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시험입양을 위해 아동을 양부모될 자에게 입양위탁해야 한다.³³⁾ 이때에도 후견인은 입양위탁을 위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 친족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15일간의 불복신청기간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위 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입양위탁이 불가능한 셈이다.³⁴⁾ 입양위탁시로부터 6개월 이상의 시험입양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법원의 입양허가심판에 의해 입양이 확정된다.

6. 익명출산의 철회

아이를 ASE에 인도한 경우라도 조서작성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모(母)는 아직 ASE에서 보호 중인 아이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CASF 제222조의6). 2개월 내라면 생부 역시 그 아이를 인지할 수 있지만³⁵⁾, 생부가 아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29) 서종희(2014), 86면.

30) 서종희(2014a), 87-88면 참조. 이 때 아이를 위한 후견사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시의 사회보험국 국장이라고 한다.

31) 서종희(2014a), 88면.

32) 서종희(2014a), 92면.

33) 만약 ASE로부터 가정위탁받아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위탁부모가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라면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종래의 가정위탁을 입양위탁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특정하여야 한다(CASF 제224조의15).

34) 서종희(2014a), 90면.

35) 이지은(2015), 187면.

거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³⁶⁾ 2010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아이 중 부(父) 또는 모(母)가 되찾아간 아이는 14%에 불과하다고 한다.³⁷⁾

한편 조서작성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후라도 아직 양부모될 자에게 시험입양을 위한 입양위탁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익명출산을 한 모는 아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후견인은 국가피후견인을 위한 친족회(conseil de famille)의 동의를 받아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³⁸⁾ 만약 후견인이 아동의 반환을 거절하면, 청구권자는 법원에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CASF 제224조의6 제3항). 하지만 이미 아이에 대해 입양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위탁이 중단되거나 입양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가 아닌 한, 더이상 아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CASF 제224조의6 제3항).³⁹⁾ 입양위탁 후에는 생부에 의한 인지도 허용되지 않는다.⁴⁰⁾

7. 익명출산으로 출생한 자녀의 정보접근권

익명출산으로 출생한 아이는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직접,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의사능력을 갖게 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하여 CNAOP에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CASF 제147조의1).⁴¹⁾ 정보제공의 신청을 접수한 CNAOP는 모(母)에게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경우에 모(母)의 신원에 관한 개인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한다(CASF 제147조의6 제1항).

- 모가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사생활 존중의 범위 내에서 CNAOP 구성원 중 1인 또는 친생모의 위임을 받은 자가 친생모의 익명성 철회에 관한 명백한 동의를 전달받은 경우
- 모가 익명출산으로 출생한 자녀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CNAOP 구성원 중 1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친생모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한 경우

하지만 모(母)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의 건강상태와 혈통 및 아이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 아동이 아동보호시설에 가게 된 이유 등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자녀는 모(母)에 대한 신원정보를 알게 된 후라도 모(母)를 상대로 재판상 인지청구를 할 수 없는데, 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프랑스 민법 제326조는 모에 대한 인지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 제325조의 예외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⁴²⁾

한편 익명출산 후 마음을 바꾸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녀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모(母)는 CNAOP에 그 의사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자녀가 CNAOP에 정보제공을 청구하면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모(母)는 CNAOP에 자녀의 정보제공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⁴³⁾ 이와 같이 모(母)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접근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익명출산 제도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⁴⁴⁾

CNAOP가 창설될 당시인 2002년에는 약 40만 명가량이

36) 서종희(2014), 88면.

37) 이지은(2015), 194면.

38) 서종희(2014a), 88면.

39) 서종희(2014a), 89면.

40) 서종희(2014a), 91면.

41) 서종희(2014), 87면 각주 31; 안문희(2013), 224면; 이지은(2015), 188면.

42) 안문희(2013), 222면.

43) 서종희(2014), 88면 각주 33.

44) Décision Cons. const., 16 mai 2012, no 2012-248 QPC. 위 결정을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이지은(2015), 188면 참조.

정보제공을 청구할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나, 실제 정보제공 청구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⁴⁵⁾ CNAOP가 창설된 2002. 9. 12.부터 2016. 12. 31.까지 CNAOP에 접수된 정보제공청구는 총 8,562건에 불과하며, 이 중 정보제공청구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는 총 7,804건이었다.⁴⁶⁾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3,192건은 친생부모의 신원이나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여 사건 종결되었으며, 약 12%에 해당하는 956건은 친생부모가 정보공개동의를 거부하여 사건 종결되었다.⁴⁷⁾

최종적으로 2002년 설립 이래 2016년 말까지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의 숫자는 2,496명이다.⁴⁸⁾ 이는 기대했던 바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기기는 하지만, 익명출산 당시 자발적으로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모(母)의 숫자에 비하면 고무적일 정도로 높은 숫자이기도 한데, 결국 출산 당시에는 익명을 희망하였던 모(母)라도 출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전문가와 접촉할 경우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8.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위와 같은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에 대해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부정적이다. 프랑스는 2007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3·4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모(母)의 동의를 전제로 모(母)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일부 허용한 2002년 CASF 개정 이후 익명출산을 선택한 친생모 중 자신의 정보를 남기는 경우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친생모의 익명성 보장과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 보장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명한 바 있다.⁴⁹⁾

하지만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02년의 CASF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친생모가 원하는 한 여전히 자신의 신원을 감출 수 있고, 이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프랑스는 아동권리협약 제2조 차별금지, 제3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제7조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친부모와 형제자매를 알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⁵⁰⁾

이에 프랑스는 2012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5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ASF가 시행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건수 및 정보제공 건수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프랑스의 익명출산 관련법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Odièvre c. France*, 22 February 2003 및 *Kearns c. France*, 10 January 2008)과 익명출산 관련 규정이 프랑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2012. 5. 16.자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준수하고 있음을 소명하였다.⁵¹⁾

그렇지만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재차 프랑스 정부에 “아동이 가능한 한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친부모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등록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친생모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친생모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CASF의 규정을 삭제하고, 익명출산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⁵²⁾

45) 이지은(2015), 179면.

46) Conseil National pour l'Accès aux Origines Personnelles, Rapport d'activité 2016, p.27.

47) Conseil National pour l'Accès aux Origines Personnelles, Rapport d'activité 2016, p.29.

48) Conseil National pour l'Accès aux Origines Personnelles, Rapport d'activité 2016, p.23.

49) CRC/C/C/FRA/4, 39-40pp.

50) CRC/C/FRA/CO/4, 10p.

51) CRC/C/FRA/5, 34-35pp.

52) CRC/C/FRA/CO/5, 7p.

III. 독일

1. 연혁

독일은 전통적으로 개신교의 영향 아래 부모의 의무와 자녀의 혈통을 알 권리⁵³⁾를 매우 중시하는 법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프랑스와 같은 익명출산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⁵⁴⁾ 하지만 임신 12주 내의 낙태를 허용하였던 형법 규정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⁵⁵⁾을 내리고, 임신 12주 내라도 적법한 상담을 거치지 않으면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익명출산에 대한 욕구가 촉발되었다. 개정 형법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부는 낙태시술로부터 최소한 3일 전에 「임신갈등 회피와 극복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이하 ‘임신갈등극복법’이라고 한다.)⁵⁶⁾에 따라 승인된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최종상담일자와 임신부의 성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낙태죄의 처벌을 면할 수 있다.⁵⁷⁾

그런데 이때 임신갈등상담소의 상담은 임신부에게 임신을 지속하도록 격려하고, 태아에게 생명에 관한 독자적인 권리가 있음과 낙태는 출산으로 인해 중대하고 비통상적인 고통이 야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

음을 임신부에게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위 법률이 명시하고 있으므로(독일 형법 제219조), 많은 임신부들이 자녀의 양육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카톨릭 교회 등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출산을 선택한 모(母)를 돕기 위해 각종의 프로젝트를 발주하였다. 특히 바이에른 주를 비롯한 독일 남부에서는 1999년부터 시작된 ‘사단법인 생명의 선물(Donum Vitae e.V.)’, 카톨릭 사회봉사부인회(Sozialdienst katolische Frauen)에서 진행한 ‘모세 프로젝트(Moses-Projekt)’, ‘사단법인 슈테르니파크(SterniPark e.V.)’에서 진행한 ‘기아 프로젝트(Project Findelbaby)’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는데, 위 각 단체는 임신부가 태아의 낙태 대신 입양을 선택한 경우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모(母)가 아동보호시설 등의 직원과 만나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였던 것이다(Arm zu Arm Übergabe).⁵⁸⁾ 이를 일컬어 이른바 ‘익명인도(anonyme Übergabe)’라고 한다. 하지만 익명인도 제도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용된 것은 아니어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총 43명의 아이만이 익명인도 되었을 뿐이다.⁵⁹⁾

반면 독일 북부에서는 병원에서부터 직접 익명출산(anonyme Geburt)을 하는 방법이 선호되었다. 독일에는 프랑스식의 익명출산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

53) 독일에서 혈통을 알 권리는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및 제2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BVerfGE 79, 256; BVerfGE 96, 56.

54) 김상용(2013), 331면.

55) 1975년에 선고되었던 이른바 ‘제1차 낙태판결’ (BVerfGE 39, 1)과 1993년에 선고된 이른바 ‘제2차 낙태판결’이 그것이다.

56) 임신갈등극복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신옥주,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法學論集 제21권 2호(2016), 249-250면.

57) 위 개정 형법에 대해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1993년 이른바 ‘제2차 낙태판결’ (BVerfGE 88, 203)에서 합헌 결정을 하였다.

58) 신동현,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과 비밀출산법제”, 비교사법 제22권 4호(2015), 1869-1870면; 신옥주,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한적 익명출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5권 제4집(2014), 348-349면; 안경희,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에 관한 소고”, 이화젠더법학 제9권제1호(2017), 6면; 장은규, “독일의 비밀출산 법제화 동향”, 외국법제동향 2015년 제4호(2015), 30면 참조.

59) 신동현(2015), 1873면; 안경희(2017), 15면.

만, 의료기관에서 모(母)에 관한 개인정보를 지득하지 않은 채 산부인과 진료 및 출산 등을 돕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적 사항이 확보되지 않은 모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금지 조문도, 인적 사항이 확보된 모에게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⁶⁰⁾ 이를 이용하여 독일 북부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에서는 임산부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출산한 경우에 병원이 직접 출생한 아이를 시설 등에 인도하는 방식의 익명출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⁶¹⁾ 익명출산 제도를 운영하는 병원 등은 출산 전 임산부를 위한 모자시설이나 출산 후 일정 기간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산후조리시설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⁶²⁾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익명출산된 아동은 총 652명이다.⁶³⁾

위와 같은 익명인도나 익명출산 제도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함부르크에서 구두상자에 담긴 신생아가 발견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사단법인 슈테르니파크(SterniPark e.V.)'의 주도 하에 2000년 이후 독일 전역에 '베이비박스(Babyklappe)'⁶⁴⁾가 설치되었다.⁶⁵⁾

2000년에 최초로 설치된 베이비박스는 6개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 말에는 무려 57개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고,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총 278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다.⁶⁶⁾ 하지만 베이비박스는 익명출산이나 익명인도와 달리 비대면 방식의 손쉬운 유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숫자도 적지 않아⁶⁷⁾ 곧 거센 비판에 직면하였다.⁶⁸⁾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 초기에는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몇 개의 법안이 제출된 바 있지만⁶⁹⁾, 2009년 독일윤리위원회가 베이비박스와 익명인도·익명출산을 모두 중지할 것을 연방정부에 권고하면서 사정은 급변하였다.⁷⁰⁾ 익명출산이나 익명인도·베이비박스 등은 영아살해나 영아유기의 숫자를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혈통을 알 권리를 박탈당하는 아동을 위해서도, 영아 유기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⁷¹⁾

또한 2011년에 익명출산·익명인도 및 베이비박스에 관한 독일 청소년연구소의 실태조사⁷²⁾에 의해 익명출산을 선

60)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학계에서 익명출산은 위법이라는데 이론이 없다고 한다. 김상용(2013), 319면 참조.

61) 신동현(2015), 1869-1870면 참조.

62) 신옥주(2014), 349면.

63) 신동현(2015), 1873면; 안경희(2017), 15, 16면.

64) Babywiege 또는 Babyfenster라고 불리기도 한다.

65) 신동현(2015), 1870면; 안경희(2017), 7면.

66) 신동현(2015), 1873면; 안경희(2017), 15, 16면.

67) 독일에서 베이비박스는 주로 불법이민자와 같이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여성이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문헌으로 서종희(2014), 110면.

68)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 찬반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신동현(2015), 1874-1876면; 신옥주(2014), 350-351면; 안경희(2017), 9-10면.

69) 2000년에는 「신분등록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2002년에는 2차례에 걸쳐 「익명출산의 규율을 위한 법률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다. 위 각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경희(2017), 9-13면 참조.

70) Deutscher Bundestag, Stellungnahme des deutschen Ethikrates - Das Problem der anonymen Kindesabgabe, Drucksache 17/190, 2009, Deutscher Ethikrat. 위 권고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신옥주(2014), 351-355면 참조.

71) 신동현(2015), 1875면; 신옥주(2014), 352-353면; 안경희(2017), 15면; 장은규(2015), 31면 참조.

택한 집단의 약 48.5%가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여성이라는 점과 주로 수치심·공포 등 정신적·육체적 부담 및 책임이나 장래에 대한 불안, 가족이나 파트너의 압력, 파트너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익명출산을 선택한다는 점이 밝혀졌다.⁷²⁾

독일은 위와 같은 독일윤리위원회의 권고와 독일청소년연구소의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익명출산이나 베이비박스 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산모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낫다라는 판단 하에 「임신여성의 지원확대 및 신뢰출산의 규정을 위한 법률」(Entwurf eines 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이하 ‘신뢰출산법’이라고 한다.)⁷⁴⁾을 제정하여 2014. 5. 1.부터 시행 중이다.⁷⁵⁾

위 법은 신뢰출산 제도의 도입을 위해 임신갈등극복법, 「민법」, 「신분등록법」,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 절차법」 등 제반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신뢰출산법에 따라 개정된 각 개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⁷⁶⁾

2. 신뢰출산의 주체

신뢰출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집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자신의 출산을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신뢰출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생부, 친족, 친지 등도 얼마든지 익명으로 신뢰출산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⁷⁷⁾ 실제로 독일에서는 2014. 5. 1.부터 2016. 9. 30.까지 총 1,277명이 익명으로 상담을 받았으며, 그 중 2017년 7월까지 총 345명의 임신부가 신뢰출산을 선택하였다.⁷⁸⁾

3. 신뢰출산의 절차

낙태나 익명출산 등을 고민하고 있는 임신부는 누구나 신뢰출산법에 따른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익명으로 임신·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신갈등상담소는 종래 임신갈등극복법에 따라 주의 인가를 받은 상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임신부의 상담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임신갈등극

72) 2011 Deutsches Jugendinstitut e.V. Projekt: Abschlussbericht, “Anonyme Geburt und Babyklappe in Deutschland – Fallzahlen, Angebote, Kontexte”, Deutsches Jugendinstitut e.V. 위 실태조사의 취지와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신동현(2015), 1870-1874면 참조.

73) 안경희(2017), 17면.

74) 이를 ‘비밀출산’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문헌으로 신동현(2015), 1868면; 엄주희,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서울法學 제 23권 제3호(2016), 110면; 장은규(2015), 28면 참조.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비밀출산’이라는 번역용어가 더욱 정확하다고 생각하며, 일본에서도 ‘vertrauliche Geburt’는 ‘비밀출산’으로 번역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헌이 이를 ‘신뢰출산’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므로, 독자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신뢰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75) 신뢰출산법의 입법연혁에 대해서는 신동현(2015), 1876-1877면 참조.

76) 신뢰출산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국내 문헌들로 김상용(2013); 서종희(2014); 신동현(2015); 신옥주(2014); 신옥주(2016), 250-252면; 안경희(2017); 엄주희(2016); 장은규(2015) 참조. 신뢰출산의 절차 및 법규정에 대하여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는 독일 자료로 신뢰출산에 대한 브로셔 ‘Die vertrauliche Geburt – Information über das Gesetz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참조.

77) <https://www.geburt-vertraulich.de/vertrauliche-geburt/#faq> 참조(최종방문일자: 2020. 9. 15.).

78) 2017.7.12.자 슈피겔지 기사 참조. 위 기사는

<http://www.spiegel.de/gesundheit/schwangerschaft/vertrauliche-geburt-346-frauen-nutzten-das-angebot-bisher-a-1157418.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일자: 2020. 9. 15.).

복법 제28조제1항).⁷⁹⁾ 임신갈등상담소는 주거지역별로 충분히 여러 개를 설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건국이 운영할 수도 있고(임신갈등극복법 제8조), 종교단체 등 민간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⁸⁰⁾ 상담은 모두 익명으로 진행되며, 대면상담과 24시간 긴급전화(0800-40-40-020)를 이용한 상담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비대면상담도 가능하다(임신갈등극복법 제1조제5항).⁸¹⁾

상담소는 임신부에게 심리적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세하고도 결론이 열려 있는 대화와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임신갈등극복법 제1조제4항 및 제5항). 이를 위해 상담은 세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 제1단계:

양육수당 등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각종의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출산 후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상담⁸²⁾

• 제2단계:

제1단계 상담에도 불구하고 모(母)가 입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후 자녀를 입양 보내는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 제3단계:

제2단계 상담에도 불구하고 모(母)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알선기관과 협업하여 신뢰출산을 하고 자녀를 입양시키는 방법에 대한 상담

특히 제3단계의 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정보가 모(母)에게 전달되어야 한다(임신갈등극복법 제25조제2항).

- 신뢰출산의 과정과 법적 효과
- 자녀가 자신의 친생부모를 안다는 것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밖의 자녀의 권리
- 생부의 권리
- 입양절차에 관한 정보
- 신뢰출산 후 자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간 등
- 자녀의 혈통증서를 열람할 권리 및 모(母)가 그 열람에 반대할 경우 자녀의 권리 제한에 관한 정보 등

위와 같은 3단계 상담 방식은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신뢰출산의 상담을 받은 임신모 중 총 25.9%는 원가정 양육을, 15.3%는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하였다고 한다.⁸³⁾

제3단계의 상담까지 거친 후에도 신뢰출산을 선택한 모(母)는 신뢰출산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할 가명과 장래 출생할 아이의 이름을 하나 또는 복수로 정한다(임신갈등극복법 제26조제1항). 또한 신뢰출산을 선택한 모(母)는 임신갈등상담소에 자신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진술하고,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받은 임신갈등상담소는 모(母)의 진술과 신분증명서를 비교·대조한 다음 모(母)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가 기재된 혈통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임신갈등극복법 제26조제2항).

임신갈등상담소는 위 혈통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

79) 안경희(2017), 22면.

80) 장은규(2015), 29면.

81) 안경희(2017), 22면.

82) 독일의 경우 1인가정을 이끄는 단독양육모가 실직한 경우 409유로의 실업수당을 받는다. 단독양육모는 연간소득 1,308유로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되며, 14세 이하의 아동돌봄비용에 대하여 세금이 감면된다. 임신부의 경우 모성보호법에 따라 출산 6주전부터 출산 후 8주까지 임신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이 12세 미만으로 미혼이거나, 사별 또는 이혼, 장기별거중인 부모 일방과 함께 살면서 다른 부모 일방으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최장 72개월까지 아동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옥주(2016), 255-259면 참조.

83) 2017.7.12.자 슈피겔지 기사 참조. 위 기사는

<http://www.spiegel.de/gesundheit/schwangerschaft/vertrauliche-geburt-346-frauen-nutzten-das-angebot-bisher-a-1157418.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일자: 2020. 9. 15.).

음, 봉투 표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다(임신갈등극복법 제26조제3항).

- 자녀의 혈통증서가 들어 있다는 사실
- 모(母)의 가명
- 병원·조산원 등 출산지원시설
- 임신갈등상담소의 주소

혈통증서 작성 후 모(母)는 임신갈등상담소로부터 그가 혈통증서에 필요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 조산원 그 밖의 출산지원시설에 입원할 수 있다. 이때 임신갈등상담소는 모(母)가 선택한 출산지원시설에 모(母)의 가명과 자녀의 이름을 통지하는 한편(임신갈등극복법 제26조제4항), 관할 청소년청에도 모(母)의 가명, 출산예정일 및 출산예정시설을 통지한다(임신갈등극복법 제26조제5항).

그 후 출산지원시설에서 신뢰출산에 의해 아이가 출생하면, 출산지원시설의 장은 출산 즉시 임신갈등상담소에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통지한다(임신갈등극복법 제26조제6항). 그 통지를 받은 임신갈등상담소는 즉시 혈통증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기재하고, 이를 연방 가족 및 시민사회 업무청(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n, 이하 'BAFzA'라고 한다.)⁸⁴⁾에 송달한다(임신갈등극복법 제27조제1항).

위와 같은 상담비용 및 임신단계에서의 병원비 그 밖에 신뢰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연방에서 부담한다(임신갈등극복법 제34조제1항).

4. 신뢰출산으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독일에서는 의료기관 기타 공공시설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 당해 기관의 장에게 출생 다음일로부터 1주일 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서면으로 출생신

고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신분등록법」 제18조 내지 제20조). 모가 신뢰출산을 선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뢰출산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의 장은 자녀 출생 다음일로부터 1주일 내에 신뢰출산임을 밝히고,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의 출생신고와 달리 신뢰출산을 선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에 모의 본명 대신 가명이 기재될 뿐이다.

아이의 이름은, 신뢰출산을 선택한 모(母)가 미리 선택해 놓은 이름을 따른다(「신분등록법」 제18조제2항제2문, 제21조제2항의a). 모가 여러 개의 이름을 선택해 놓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아이의 성(姓) 역시 출생신고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결정한다(「신분등록법」 제21조 제2항의a). 아이의 성명을 결정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BAFzA에 출생 사실, 친생모의 가명 및 아이의 성명을 통지하여야 하며(임신갈등극복법 제26조제7항 및 신분등록법법규명령 제57조제1항제4호), 가정법원에도 이를 통지한다(「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8조의a 제1항).

신뢰출산을 통해 출생한 자는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독일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4조).

5. 신뢰출산을 통해 출생한 자녀의 보호

신뢰출산을 하면 모의 친권은 자동적으로 정지되며(「민법」 제1674조의a), 청소년청에서 아이를 시설로 인계해간다.⁸⁵⁾ 가족관계등록공무원으로부터 신뢰출산을 통해 출생한 아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가정법원은 아이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라면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미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민법」 제1774조 2문). 신뢰출산에 있어서는 청소년청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⁸⁶⁾

84) 홈페이지 주소: <http://www.bafza.de/startseite.html> (최종방문: 2020. 9. 15.)

85) <https://www.geburt-vertraulich.de/vertrauliche-geburt/#faq> 참조(최종방문: 2020. 9. 15.).

86) 안경희(2017), 29면.

신뢰출산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통상 입양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신뢰출산을 한 모(母)는, 모가 가정법원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적 사항을 제출할 때까지, 장기간 소재불명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민법 제1747조제4항), 별도로 모의 입양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입양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신뢰출산법 제6조).

6. 신뢰출산의 철회

법원에 의한 입양허가심판이 있기 전까지 모(母)는 언제든지 신뢰출산을 철회하고, 아동을 스스로 양육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임신갈등극복법 제30조). 독일에서 입양절차는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므로, 그 기간동안에는 철회권이 보장되는 셈이다.⁸⁷⁾ 만약 모(母)가 신뢰출산을 철회하고 가정법원에 자녀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제출하면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는 때부터 모의 친권은 회복된다. 따라서 이로써 모의 입양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입양절차는 중단되며⁸⁸⁾, 미성년후견인은 자녀를 모(母)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모(母)의 친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자녀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독일 민법 제1666조 및 제1666조의a).⁸⁹⁾

한편 모(母)의 신뢰출산은 생부의 친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신뢰출산 여부와 무관하게 생부는 자녀를 인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부는 입양에의 동의권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신뢰출산의 경우 친생부는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해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다.⁹⁰⁾

7. 신뢰출산으로 출생한 자녀의 정보 접근권

신뢰출산에 의해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지받은 임신갈등상담소는 혈통증서가 담긴 봉투를 BAFzA에 송달하여야 한다(임신갈등극복법 제27조제1항). 신뢰출산으로 출생한 자녀는 만16세에 달하면 BAFzA가 보관 중인 위 혈통증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임신갈등극복법 제31조제1항).

다만, 혈통증서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母)는 자녀가 만15세에 달하면, 임신갈등상담소를 상대로 자신의 가명과 자녀의 출생일·출생장소를 적시하여 혈통증서의 열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임신갈등극복법 제31조제2항). 이 때 모(母)는 향후 혈통증서의 열람과 관련된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소송을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신뢰관계 있는 자를 지명하여 임신갈등상담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받은 임신갈등상담소는 지체 없이 BAFzA에 모(母)에 의한 열람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모(母)를 위해 누가 소송을 대신 해 줄 것인지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임신갈등극복법 제31조제3항제4문), 위 통지를 받은 BAFzA는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자녀에게 혈통증서의 열람을 거부해야 한다(임신갈등극복법 제31조제4항).

이 때 자녀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혈통증서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임신갈등극복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모(母)의 신체·생명·건강·인격적 자유 또는 그와 유사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에 비추어 모의 익명성 유지에 대한 이익과 자녀의 혈통을 알 이익을 비교衡量하여 열람 여부를 판단한

87) <https://www.geburt-vertraulich.de/vertrauliche-geburt/#faq> 참조(최종방문일자: 2020. 9. 15.). 엄주희(2016), 111면에도 같은 취지의 서술이 있다.

88) 김상용(2013), 335면.

89) 안경희(2017), 29면.

90) C Budzikiewicz, M Vonk, Legal Motherhood and Parental Responsibility, 17 Eur. JL Reform 216(2015).

다(임신갈등극복법 제32조제2항2문). 가정법원이 혈통증서 열람 청구를 기각한 경우라도 자녀는 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혈통증서 열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임신갈등극복법 제32조제5항).

모(母)는 신뢰출산을 위한 상담 과정에서 자녀를 위해 편지를 남길 수도 있다. 이 편지는 임신갈등상담소를 통해 입양알선기관으로 전달되며, 입양절차에서 아이의 미성년후견인이나 양부모가 이 편지를 열람할 수 있다. 입양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 편지는 BAFzA에 전달된다(임신갈등극복법 제26조제8항).

8. 신뢰출산과 베이비박스간의 관계

신뢰출산법의 제정과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⁹¹⁾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익명출산이나 베이비박스 제도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당시 독일 전역에 걸쳐 여전히 총93개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익명인도를 할 수 있는 시설은 8개, 익명출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은 20개가 남아 있었다.⁹²⁾ 익명인도나 익명출산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이나, 모에 관한 인적 사항을 병원 기타 시설에 보관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조문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익명인도 또는 익명출산되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청소년국에 통보한다.⁹³⁾ 아

이들은 기아로 간주되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기아의 성명을 청설하고, 출생일시를 추정하여 출생등록을 하며, 청소년국이 해당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 입양절차를 진행하게 된다.⁹⁴⁾

신뢰출산법 제정 당시에는 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을 금지하지 않은 결과 신뢰출산법이 시행되더라도 곧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과 같이 편리한 방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신뢰출산 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⁹⁵⁾ 하지만 신뢰출산법 시행 후 3년이 도과한 현재 기존 익명출산 제도의 이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신뢰출산 제도는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⁹⁶⁾

9.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3년 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으로 인해 아동의 원가정 양육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이유로 독일에 이와 관련된 조치에 대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⁹⁷⁾ 이에 독일은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신뢰출산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을 이용하려는 임신부 또는 산모를 설득하여 아동의 출생신고는 익명으로 하되, 아동을 위해 친생모의 정보를 비공개로 보관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최대한 아동유기를 방지하고자 하였음을 소명하였다.⁹⁸⁾

91) 독일은 신뢰출산에 관한 홈페이지 운영, 신뢰출산법 해설서 및 브로셔의 제작·배포, 긴급전화 홍보용 스티커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뢰출산을 홍보하고 있다. 신뢰출산에 관한 홈페이지로는 www.geburt-vertraulich.de 참조(최종방문일자: 2020. 9. 15.).

92) http://www.sternipark.de/fileadmin/content/PDF_Upload/Findelbaby/Babyklappenliste_Stand_Juni_2016_.pdf 참조(최종방문일자: 2017. 11. 14.).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베이비박스 중 상당수는 병원에 설치된 것이다. 현재 위 페이지는 삭제되었다.

93) 장은규(2015), 31면.

94) 김상용(2013), 319면; 안경희(2017), 4면; 장은규(2015), 31면.

95) 신동현(2015), 1884면 참조.

96) 차이트 지 2017.7.12.자 기사 참조. 위 기사는

<http://www.zeit.de/gesellschaft/familie/2017-07/vertrauliche-geburt-deutschland-gesetz-2014-alternative-babyklappe-zwischenbilanz>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일자: 2020. 9. 15.).

97) CRC/C/DEU/Q/3-4, para.6.

98) CRC/C/DEU/Q/3-4/Add.1, para.37-39.

이에 대해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독일이 베이비박스의 새로운 설치를 금지하고, 익명출산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며, 임신부와 출산모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들을 마련하여 영아유기의 숫자를 감소하고자 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베이비박스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베이비박스를 폐쇄하지 않는 것은 UN 아동권리협약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⁹⁹⁾

이러한 전제하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을 익명으로 유기하는 관행을 없애고 대안을 마련 및 강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아동유기의 근본 원인을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경주할 것을 권고하였다.¹⁰⁰⁾ 특히 익명유기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에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가족계획 및 출산 건강 서비스, 적절한 상담 및 사회적 지원 제공, 고위험 임신의 예방,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지원, 최후의 수단으로서 법원에서의 익명출산 가능성의 소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실시하였다.¹⁰¹⁾ 또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모에 대한 비공개 정보(confidential record)를 보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⁰²⁾

IV. 결론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프랑스의 익명출산 제도와 독일의 신뢰출산 제도만을 소개하였으나, 그 밖에도 많은 국가들이 출산의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가령 오스트리아는 2001

년 「익명 임신 및 출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임신모는 어느 병원에서든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으며, 체코는 2004.6.10. 일명 「비밀출산에 관한 법률」(422/2004 Sb)을 제정하여 같은 해 9.1.부터 시행 중이다.

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영아를 유기하는 행위를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고, 영아유기에 대해 형사면책의 특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익명출산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가령 미국은 1999년 처음으로 텍사스 주에서 「아기피난소법」(Safe Haven Law)이 제정된 이래 2008년에는 50개주 모두가 「아기피난소법」(Safe Haven Law)을 제정·시행 중인데, 위 법에 따르면 주법에 따라 정해진 장소(가령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응급센터, 경찰서, 소방서, 종교시설 등)에 신생아를 유기한 산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¹⁰³⁾ 헝가리는 베이비박스에 자녀를 놓고 가는 행위에 대해 형사면책의 특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이를 비밀입양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여 아이에 대한 입양절차를 진행한다.¹⁰⁴⁾

하지만 위와 같이 베이비박스나 아기피난소 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담이 뒷받침되지 않은 익명출산 제도의 도입은 자녀의 원가정에서 양육받을 권리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 내지 출생통보제 도입을 계기로 모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아동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출생신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99) CRC/C/DEU/CO/3-4, para.30.

100) CRC/C/DEU/CO/3-4, para.31.

101) CRC/C/DEU/CO/3-4, para.31.

102) CRC/C/DEU/CO/3-4, para.31.

103) 미국에서 위 법의 확산추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서종희(2014), 90-91면 참조. 이 법이 확산될 수 있었던 동기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문헌으로 권재문(2015), 478-479면 참조.

104) CRC/C/HUN/3-5, para.84-85.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2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족법개정운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

제3차 · 4차 가족법개정(1978~2002) ②

연합회 이태영 회장은 1984년 8월 1일, 가족법 개정을 반대하는 가장 커다란 세력인 한국유도회 임원진과 만나 대화를 시도했으며, 8월 30일부터 전국 89곳에서 일제히 옥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또한 포스터와 전단, 배지 등을 만들어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했다. 서명운동은 연말까지 계속 되었으며 서명한 사람은 30만 명에 달했다.

여론조성을 위한 이러한 대 사회활동과 아울러 개정 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국회 로비활동도 전개해 나갔다. 11대의 마지막인 제123회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키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8월 22일 이태영 회장, 김갑순, 안상님 부회장, 차명희 총무가 건의문을 가지고 국회의 주요 인사를 방문했다.

그해 9월 5일에는 여성국회의원들이 연합회 회장단을 초청하여 가족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10월 4일에는 국회의원 모두에게 입법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런 과정에서 연합회와 상담소에는 인신공격, 독설, 폭언으로 가득 찬 가족법 개정 반대자들의 편지가 날아들기도 했다.



▲ 1984년 8월 22일 가족법개정을위한여성연합회 회장단
한병채 국회법사위원장 방문

그러나 가족법 개정을 향한 열기는 더욱 고조되어 9월 19일과 21일에는 YWCA 주최로 '가족법 개정을 위한 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9월 18일에 열린 제21회 여성대회에서는 가족법 개정을 위한 특별강연회를 열고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상담소는 9월 27일 피해 사례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이를 통해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한편, 개정 법안까지 만들어줘야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겠다고 판단한 연합회는 '가족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서울대 박병호 교수, 연세대 김주수 교수, 건국대 김용한 교수, 인하대 배경숙 교수, 전북대 한봉희 교수를 법안작성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9월 15일 첫 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977년 개정 당시 통과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주장하기로 하고 법안 작성의 대표 집필은 김주수 교수에게 위임하고 분야별로 임무를 나누어 맡아 작업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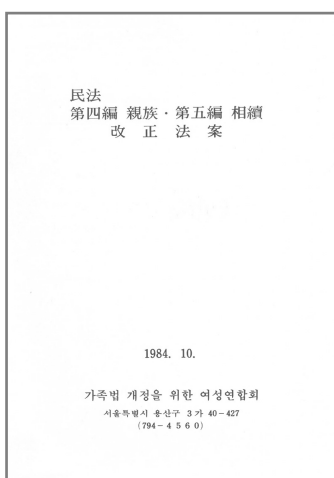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 끝에 10월 31일 '가족법 개정안'을 인쇄하여 퍼냈으며, 11월 2일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송하면서 이 법안의 제안자가 되어주는 동시에 상정,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11월 13일에는 회원단체와 각 언론사에 개정법안을 우송했다.

1984년 9월 20일 제123회 정기국회가 열렸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서명해야 했으나 여성 국회의원들조차 '당론과 다르다',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가족법 개정의 제안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결국 제안 의원은 김길준, 김정수, 황산성, 고정훈, 백찬기, 이원형, 정남 의원 등 7명에 불과하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한 채 제123회 국회의 마지막 회의가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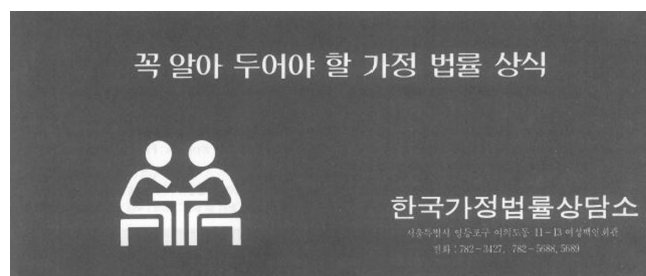
연합회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는 한반도 2천만 여성 전체가 받은 수모'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11월 14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가족법개정을위한여성연합회의 존속을 결의하고 가족법 개정 촉진대회를 열기로 했다. 촉진대회는 11월 29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73개 회원단체에서 6백여 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가족법개정운동을 계속할 것과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결의했다.

1985년에 들어서면서 연합회는 '투표권 행사를 통한 가족법 개정운동'을 제3기 개정운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1월 25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한 여성 유권자 선언'을 채택, 공포했다. 이후 연합회 활동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상담소와 YWCA는 공개강좌와 방송 등을 통한 계몽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갔다. 상담소는 이태영 소장의 신념인 '법의 서민화,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팸플릿 <꼭 알아 두어야 할 가정 법률 상식> 3만부를 제작, 배포했다. 이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1986년 <민주시민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10만부를 발행했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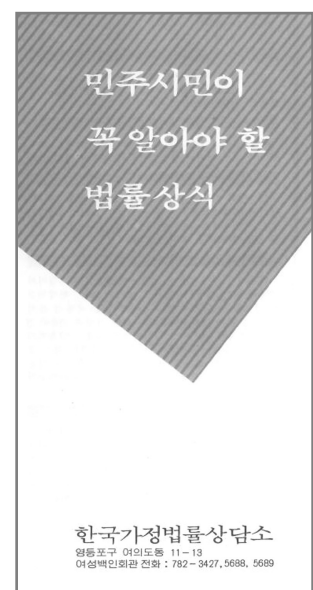


▲ 1984년 10월 31일 인쇄한 '가족법 개정안'



▲ 1985년 상담소에서 발행한 <꼭 알아 두어야 할 가정 법률 상식>

▶ 1986년 상담소에서 발행한 <민주시민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가정폭력상담실

행위자 상담



아내에 대한 폭행이

이를 말리던 자녀와의 상호폭력으로 이어지기도

사건번호 2018버2*** 상해,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7회, 음주문제상담 4회,
집단상담 8회, 교육강좌 2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총 23회 실시

상담기간

2019. 4. 8. ~ 2019. 10. 7.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27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성인이 된 딸 2명이 있다. 행위자는 2018년 8월 사건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는데 또 다른 피해자인 큰 딸이 엄마에게 왜 그러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딸에게 욕설을 하며 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또한 이를 말리는 아내에게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욕을 하며 옆구리와 팔을 주먹으로 5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행위자는 6개월간 보호관찰과 상담 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갈등원인으로 본인의 음주문제와 폭언을 꼽았으며, 사건 이후 단주 노력을 하고 있었다. 큰 딸은 사건 후인 2018년 10월 호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기 전 화해하고 전화통화도 하며 지내고 있었다. 사건 이후 아내와도 화해하였지만 필요한 말만 하는 정도로 대화는 활발하지 않았다. 상담기간 중 행위자의 실천과제로 단주와 욕설하지 않기를 정하였다.

행위자는 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폭력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2~3회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위자는 계획한 상담에 성실하게 참석하였고, 중간 점검 결과, 술은 거의 마시지 않으며 가족들에게 욕설도 하지 않았지만 통명스러운 말투는 잘 고쳐지지 않았다. 아버지 역할에 대하여 현재는 부족한 아버지임을 인정하였고 미래에는 딸들과 대화를 잘하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변화를 인정하였다. 행위자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마셔도 그냥 잠을 자기에 피해자도 작은 딸도 편하게 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상태로만 지속되어도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행위자가 진작 느끼고 변했으면 좋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보낸 시간을 안타까워하였다. 본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이 내려졌더라면 돈만 내고 말았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보호처분에 만족해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0점, 상담 종결시점은 6점으로 평

가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과거의 응어리가 다 풀리고 더 좋은 부부관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는 마이너스 점수였지만 상담종결시점은 0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아내의 평가보다 스스로의 점수를 더 박하게 평가한 것으로 향후 노력을 당부하였다. 행위자는 단주 실천과 가사 참여, 피해자와 대화 잘하기 등을 다짐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3*** 폭행 / 2018버3***특수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4회, 음주문제상담 4회,
전화상담 1회, 부모집단상담 6회,
교육강좌 1회

행위자(아들) 개별상담 12회, 교육강좌 2회
등 총 30회 실시

상담기간

2019. 4. 10. ~ 2019. 10. 11.

상담경과

본 사건의 행위자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2018년 10월 사건당일 아버지는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하는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아내의 팔을 5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아들은 이에 대항하여 아령으로 아버지의 왼쪽 측두부를 1회 가격하여 3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이 발생하자 큰 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두 사람 모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아들에 의하면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화가 나면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화를 내고 폭력적이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으며, 본 사건 발생 시 어머니가 다치는 것을 무조건 막고 싶었다고 하였다. 아들은 마음속에 폭력성이 자라는 것 같다고 염려하면서 상담을 통하여 폭력성을 자제하는 노력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사건 이후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돈을 벌어서 독립하고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생각이 강하였다.

아버지는 사건과 관련하여 아들 훈육에 아내가 예민하게 대응하여 폭력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켜주기를 바랐다. 아버지의 가부장적 사고, 전통적인 가치관 등이 아들과의 충돌을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음주문제 상담에 이어 부모집단상담에 참여하였는데 그동안의 상담을 통하여 아들에 대한 기대가 일방적이었음을 인식하고 마음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다. 현재 아버지 역할에 대하여는 퇴직하여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지 못하는 점 등을 꼽으며 10점 만점에 5.5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사건 이후 아내는 오히려 자신을 배려해주어 이전보다 관계가 좋아졌다고 했다. 다만, 아내와 아들간의 집착과 의존이 심각하여 문제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아들과 대화를 선불리 하다가 또 다른 충돌이 있을까 두려워 굳이 대화를 시도하지는 않으면서도 아들에 대한 마음을 배려로 표현하였고, 아내의 가사를 많이 도왔다. 종결상담 즈음에는 재취업을 하여 규칙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직장에 다니지 않을 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가족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스스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되돌아보기도 하였다.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10점 만점에 1점으로, 아버지는 아들과 관계를 이전에는 2~3점으로 상담종결 시에는 8점으로 평가하여 생각의 차이를 드러냈다. 상담종결 시 아들은 향후 자신을 위해서라도 폭언이나 폭력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아버지 역시 폭력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과 아들에게 온화한 표정으로 대하기, 아들이 원하는 것을 아내를 통하여 미리 해주기 등을 다짐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어떻게 할까요?



남녀관계

● 아들을 낳아준다는 조건으로 가진 남녀관계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Q 딸만 셋 있는 남자가 아들을 낳아주면 아내와 이혼하고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여 교제하였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A 부인과 자녀가 있는 남자인 줄 알면서 아들을 낳아주면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그 자체가 공서양속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그러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남편과 동거 중인 여자의 물건을 가져갈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Q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꽤 씬해 친정 식구들과 함께 여자 집 열쇠를 따고 들어가 살림살이를 부수고 몇 가지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자가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벌을 받게 되나요?

A 비록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여자의 집이라도 주거권자인 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을 따고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형법 제319조), 여러 명이 함께 주거침입을 하게 되면 그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동법 제320조). 살림살이를 부수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재물손괴죄, 절도죄에 해당합니다(동법 제366조, 제329조). 또한 이러한 행위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결혼을 빙자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Q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했던 남자가 이제 와서 저를 피하고 결혼을 미루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결혼을 회피한다면 혼인을 강요할 방법은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다만 약혼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결혼을 미루는 상대방에게 파혼을 요구하고(동법 제804조 제7호), 정신적·물질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06조).



● 서로 좋아서 맺은 비혼남녀의 성관계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Q 교제하던 남성과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A 성인인 비혼 남녀가 교제 중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이 합의하여 맺은 성관계이므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비혼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성과 친권·양육권 문제

Q 남자친구와 1년 정도 동거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임신하자 다른 여자를 만나더니 결국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임신 때문에 더는 일도 할 수 없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서 시설에 입소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아이의 성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는 꼭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A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이의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자녀의 출생신고를 귀하 혼자서 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시에 귀하의 성 또는 아이 아버지의 성 중 하나를 자녀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제3항). 이후 아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부자관계를 밝히기를 원한다면 아이 아버지에 대한 인지절차를 통해 부자관계를 등록부상에 밝힐 수 있습니다(동법 제863조,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그리고 자

녀의 인지 전에는 양육권과 친권은 모인 귀하에게 있으며, 인지 이후에는 협의 또는 재판으로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제864조의2, 제837조).

혼 인 ①

● 성인은 부모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Q 대학에 재학 중인 22세의 남학생입니다. 재수할 때부터 함께 공부하며 교제해 온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십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혼인이 가능한 연령은 남녀 모두 18세입니다(민법 제807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할 때는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법 제808조). 귀하는 이미 성년이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된다

Q 작년에 결혼했는데 미루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이므로 결혼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20년 전 외아들인 남편과 결혼해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손위 시누이가 세 명에 시이모들도 가까이 살아 간섭이 심했습니다. 중풍으로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시아버지의 수발을 들어야 했기에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고,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국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2년 전 우울증이 발병했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시부모 집에서 나와 친정에서 요양을 한 결과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께서는 저를 병자 취급하면서 부모도 제대로 모시지 못할 바에는 이혼을 하라고 하였고 남편은 시누이들 말에 휩쓸려 저를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이라도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요?

A 귀하의 경우 그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다른 지장이 없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바라고 있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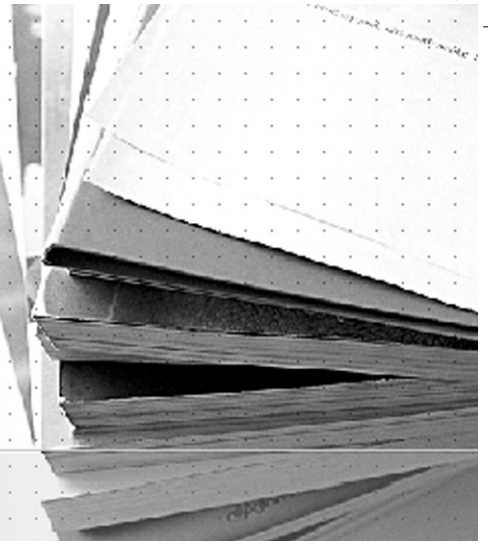
판례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그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므86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부부의 일방이 일시적으로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하여 보지도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5.26. 95므90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잠시 정신질환에 걸렸다 하더라도 부부는 치료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고 이미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귀하에게 혼인과 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진영 상담위원

좋은 책



청명한 가을이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딱 한 덩이 떠 있는 것을 보니 주말마다 고심하다 결국은 가지 못한 르네 마그리트 전시회가 생각 나서 마음이 쓰리다. 대역병의 시대를 지나면서 미용실이건 백화점이건 가야할 일이 생기면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오늘 꼭 가야하나?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가득 들어찬 콘서트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의 모습을 보면 신기하고 새삼스럽고 우울감이 밀려온다. 저런 날들이 다시 올 것인가! 모처럼 백화점에 갔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차창을 열고 손을 내밀어 체온을 체크 당하고, 슈퍼마켓 입구에서 자연스럽게 향균 물티슈를 뽑아 손을 닦고 쇼핑카트의 손잡이 등등을 닦는다. 새롭게 입점한 떡볶이 가게에서 포장을 부탁하면서 QR코드를 내민다. 모르는 이가 다가오는 것 같으면 움찔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뒤로 하게 된다. 슬프다. 작은 바이러스가 바꾸어 놓은 나와 내 세계의 모습들. 눈으로 볼 수 없는 바이러스의 세계에 함몰되는 시기에 이 책 『우주는 푸른 용』을 읽으면서 거대한 우주를 생각하며 감동하고 위로 받았다.

책의 표지는 오리온성운 사진이다. 그리고 궁수자리 삼렬성운, 게성운, 석호성운 등의 사진이 이어서 실려 있다. 성운은 하나의 은하 안에 있는 성간물질의 구름이다. 이러한 성운과 수천억 개의 별들이 은하를 이루는데 태양계를 포함 약 1,000억 개의 항성과 성단 및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은하다. 그리고 3개에서 수십 개의 은하가 지름 150만 광년 정도의 범위 내에 모여 있는 것을 은하군이라 하고 50개 이상의 은하가 수천만 광년 정도의 범위에 모여 있는 것을 은하단이라 한다. 모처럼 바이러스와 소확행으로 점철된 미시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광활

하다는 단어로는 모자랄 우주에 대해 생각했다.

책은 생태신학자이자 문화사학자인 미국의 토마스 베리 신부와 한 젊은이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하느님의 계시로서의 우주, 창조물로서의 지구, 빅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38억 년 전, 거대한 침묵의 불이 있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생명, 나아가 우리 인간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태초의 불덩어리가 있다. 저자인 물리학자 브라이언 스윔은 두 사람이 하룻저녁 나누는 짧은 대화를 통해 우주의 기원과 발전을 돌아보며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인간 생명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모색한다. 스윔에 따르면 우주는 단지 물질 충돌의 우연한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발전하는 어떤 존재에 더 가깝고, 우리 인간 또한 이 **창발** 하는 우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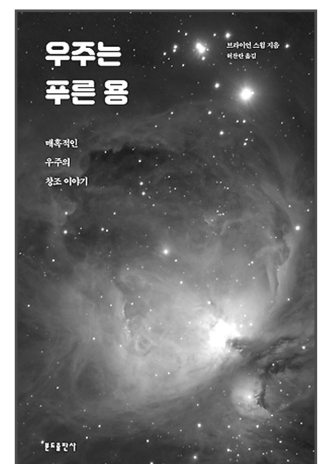
책은 우주를 이야기하며 창조와 환희, 매혹 그리고 우주적 예민함을 이야기한다. 또한 핵과 핵무기로 대표되는 지구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돌아보게 한다. 창조물로서 지구를 보면 “바다는 우주적 민감성을 구현하고, 땅은 우주적 기억을 구현”한다. 이를 이해하며 우리의 우주적 여정은 한 종(種)으로서 우리가 참된 성숙에 이르는 과정이며, 이 길에서만 그리고 오직 이 길만이 지구를 다시 꽃피게 할 것이다. 우리가 우주에 속해 있는 종이라는 성숙한 의식을 갖고 다른 생명체와 상호연관성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생태 위기에 놓인 지구를 살릴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그리하기를, 그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숙 현 편집부장

우주는 푸른 용 매혹적인 우주의 창조 이야기

브라이언 스윔 지음
허찬란 옮김

분도출판사, 2020



아무도 모른다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출연 야기라 유야, 기타우라 आयु, 기무라 히에이, 시미즈 모모코, 간 하나에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2004년 작 <아무도 모른다>는 1988년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던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다. 네 자녀의 어머니가 수개월 간 가출한 상태로 집에 돈만 가끔 보내며 아이들을 방치하였고, 결국 그 와중에 두 살짜리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다. 영화는 실제 상황을 다소 ‘순화’시켰고, 연기 경험이 일천한 어린 배우들의 사랑스러운 매력과 처참한 현실에서도 보석 같은 순간들을 포착하는 감독의 사려 깊은 시선(그가 이 영화를 완성하기까지 15년이 걸렸다)이 놀라운 품위를 더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그리는 아동학대와 방치의 현실까지 순화되거나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의 고통이 덜어지는 건 아니다.

영화 <아무도 모른다>는 아키라(야기라 유야)와 엄마가 새 집으로 이사 오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이삿짐이 다 들어오고 난 뒤, 아키라와 엄마는 커다란 트렁크 두 개를 조심스럽게 열고 그 안에서 셋째 시게루(기무라 히에이)와 넷째 유키(시미즈 모모코)가 밝게 웃으며 기어나온다. 그리고 둘째 교코는 밤거리를 서성거리며 아키라가 들어와도 좋다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이 많으면 집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엄마는 각자 아버지가 다른 세 아이들의 존재를 숨기고 아키라 혼자만 키우는 것처럼 가장한다. 아키라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가 닥쳐온 초겨울, 엄마는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그와의 동거를 위해 집을 나가버린다. 크리스마스엔 돌아오겠다는 메모와 약간의 돈을 남긴 채 떠난 엄마는, 그러나 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제목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실상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은 거짓이다. 아이들이 거주하는 맨션 주인은 집세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안을 기웃거렸고, 아키라에게 유통기간이 지난 도시락이나 김밥 등을 챙겨주던 편의점 직원들도 아이들의 상황을 대충 알고 있었다. 경찰이나 사회 복지 시설에 신고하는 순간 남매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것만은 싫다는 아키라의 단호한 거절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었다는 식의 설명이 스쳐가듯 등장한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의 참혹한 상황에 소극적인 도움만 제공하고, 오히려 모르는 척해주는 게 아이들이 원하는 바라면서 그들은 모두 망했다. 아키라는 엄마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 ‘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만, 모두들 “개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든가 “나도 요즘 먹고살기 힘들어”라며 외면하기 일쑤다. 엄마는 여태까지 고생만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재밌게 살고 싶으면서 골치 아픈 짐처럼 여겨지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방기한다. 아이들은 어쨌든 태어났지만, 아무도 그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가 아니라,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가 이 아이들이 처한 현실인 것이다.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며 동생들의 보호자 노릇을 하던 열두 살 아키라가 지키려고 애썼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이 아이들을 지켜주던 최후의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 타인의 선의를 믿으려 애썼지만 번번이 배신당하던 순간의 아키라의 텅 빈 표정을 잊을 수 없다. 동네 이곳저곳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또래 아이들과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다는 사실을 어렵게 깨닫던 셋째 시게루의 주눅거리는 몸짓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막내 유키가 가장 좋아하던, 걸을 때마다 뻑뻑거리는 신발의 그 소리를 오랫동안 잊을 수 없다. 냉정한 세계에 보내는 가냘픈 구조 신호, ‘내가 여기 있어요’라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 하던 그 희미한 알림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도.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2020년 9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이병주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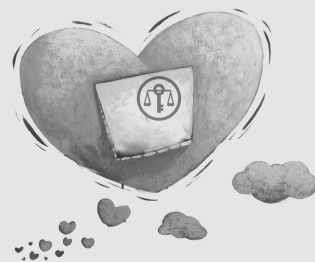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강원모, 김정민, 김계현, 김상철, 김소희, 김수연, 김승혜, 김하영, 박연경, 박준영, 박지윤, 석재현, 성취연, 윤여영, 이상은, 이수정, 이시현, 이용안, 장성윤, 전우인, 정유나, 조예람, 조주현, 최희원, 한봄이, 홍서영 님

후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상담소, 열화상 카메라 등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상담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 시책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상담업무를 비대면 상담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방문자 인적사항 확인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도입하여 내담자와 직원들 모두를 위한 방역시스템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관련사진 2면)

「알아두면 힘이 되는 가족법」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한 회의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인 대상 가족법 교육의 활성화와 유튜브를 통한 홍보 확대를 위하여, 본소에서는 9월 19일 「알아두면 힘이 되는 가족법」이란 주제로 교육용 영상제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본소에서는 객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유튜브 영상 기획과 제작을 진행해 줄 (주)베리모먼트에서는 윤종진 국장, 이경주 수석국장, 임소희 부장 등이 참여하였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가족법」 교육영상에서는 약혼, 혼인, 이혼, 부모와 자녀, 친권, 후견, 상속, 가정폭력 관련 법률 등을 사례자 인터뷰와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일반인들이 유튜브를 통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사진 2면)

가정폭력관련 프로그램 비대면으로 진행

본소는 지난 9월 2일, 9월 9일, 9월 16일, 9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회기에 걸쳐 음주문제 피해

자 집단상담 및 가해자 집단상담을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9월 3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상담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9월 10일에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인 동지교실이 '시간을 넘어서 고통을 지속시키는 트라우마 관련 장애'라는 주제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관련사진 2면)

9월 한 달 간 대화법 교육 동영상 촬영

지난 9월 10일부터 한 달 간 대화법 교육 동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이 진행되었다. 완성된 구성안에 따라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이 전문가 내레이션을 맡아 해당부분을 촬영하였고, 이후 '우리 부부 살리는 존중 대화법'과 '부모 자녀 살리는 존중 대화법'을 각 촬영하였다.



소송구조 관련 변호사 회의

9월 17일 소송구조 관련 변호사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구조 진행상황과 결과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이 날 회의에는 객배희 소장과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그리고 김민선 변호사와 손명진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

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순회상담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고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다른 부문도 점차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9. 24. '동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혼전·후 가정 상담원'을 위한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법률 교육
- 북미영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북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9월 1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Ⅱ수업에서 상담참관에 필요한 가족법 개요에 관해 비대면 강의하였고, 8일에는 리갈클리닉Ⅱ수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15일에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상속권상실TF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9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갈클리닉Ⅱ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관련법 이해 및 가정폭력상담 개요”를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하였다. 15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 발간과 관련한 중간점검의 서면자문을 하였다. 24일과 25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손해배상(사실혼 파기), 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2020년 9월 상담통계

총상담 5,339				
법률상담 (4,993)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618	4,225	147	2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180	36	130		

* 인터넷 정보 이용 21,677

2020년 9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339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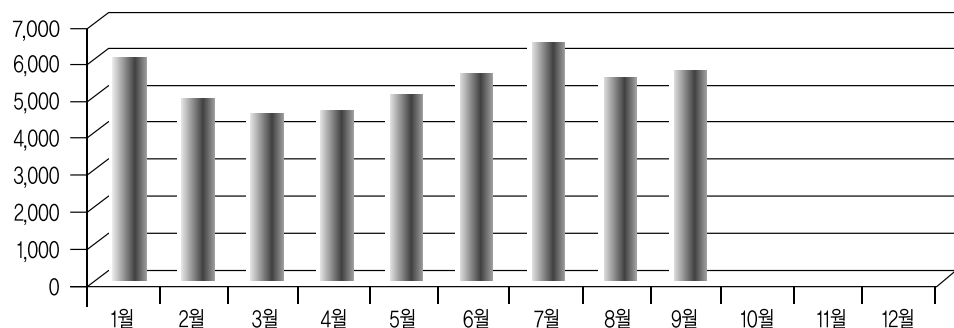
4,993건(93.5%), 화해조정 180건(3.4%), 소장 등 서류작성 36건(0.7%), 소송구조 130건(2.4%)이었다.

법률상담 4,99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0년 8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이혼(23.2%→24.2%), 위자료·재산분할(10.0%→10.9%), 친권·양육권(5.2%→5.6%), 면접교섭권(2.5%→2.8%), 인지(0.8%→0.9%), 친생부인(0.8%→1.0%), 입양(0.9%→1.2%), 친양자(0.9%→1.1%), 성변경(0.9%→1.0%), 파양(0.3%→

0.4%), 미성년후견(0.7%→0.8%), 가사기타(8.8%→8.9%)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3%→0.9%), 민사절차(0.2%→0.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99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618건(12.4%), 전화상담 4,225건(84.6%), 인터넷상담 147건(2.9%), 순회상담 2건(0.0%),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0년
월별
총 건수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사업실패와 사기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328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3세)은 프린터 관련 특허를 내고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해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적자가 지속되면서 대출금마저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폐업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재기를 꿈꾸며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 또다시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던 신청인은 설상가상으로 보이스피싱까지 당해 3,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재기불능상태가 되었고 사업은 가까스로 이어가지만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하여 채무상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사업실패와 사기로 채무가 증대된 신청인은 6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8. 25.)

채무자를 면책한다.

자녀와 연락을 단절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아동을 대신 양육하던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19-354

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청구인(여, 57세)은 위탁아동인 사건본인(남, 7세)의 위탁모로, 2012년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다. 미혼모였던 사건본인의 친모는 사건본인이 태어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후에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친모는 이웃인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잠시 돌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친모가 초반에는 분유와 기저귀 등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이 뜸해지고 지원이 끊어졌다. 친모의 오빠(사건본인의 외삼촌) 또한 사건본인에게 관여하지 않게 되었고 청구인이 위탁모를 자청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지인을 통해 기저귀, 옷, 포대기, 장난감 등의 물품을 얻고 생활비를 아끼며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기쁨을 얻었고, 정성을 다해 사건본인을 돌보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탁모의 자격으로는 사건본인이 학교나 병원 등을 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문제에 매번 부딪히게 되어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사건본인을 입양하기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연령대가 높고, 친모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면 사건본인을 찾아올 것이라는 점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사건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2020. 5. 21.)

1. 상대방 친모 ○○○의 사건본인 ◇◇◇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 ◇◇◇의 후견인으로 청구인 □□□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인천가정법원부친지원에서 실시하는 미성년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확인서를 (2020. 7. 31.)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2020. 7. 31.)까지 (2020. 6. 30.)을 기준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상속재산 포함)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포함} 결과를 첨부할 것]

6. 미성년후견인은 (2021. 6. 30.)까지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2020. 12. 3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본인 남편과 혼인신고 후,
교류 없이 장기 별거 중인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369

담당 : 안준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4세)는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2000. 1. 경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당시 일본에 거주 중이던 일본인인 피고(남, 70세)를 소개받아 2000. 3. 경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인 2000. 4. 경 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막상 일본에 건너가서 보니 중매업체에서 알려준 정보와 다른 것이 너무 많았고, 이에 원고는 혼인 하

고 몇 달 안 된 2000. 6. 경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완료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정신지체 3급이던 원고는 당시 일본에서 이혼 관련 서류를 챙겨오지 못한 채 귀국하여 소송 당시까지 한국에서는 피고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현재 94세의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는 물론이고 원고의 어머니도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여야 하나, 현재 원고에게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어 기초수급자 신청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알고 있지 않으므로, 주소불명인 피고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8개월 가량이 지난 후 공시송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원고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고, 원고의 어머니 역시 94세의 고령으로 스스로 이혼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혼 신고 과정까지 도와드려야 해서 사건의 마무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 사안과 같이 20년 가까이 아무런 연락도 없고 연고도 모르는 사안, 즉 혼인관계가 파탄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5. 2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안준형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혼인신고 후 16년째 연락이 두절된
중국 국적 아내와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0-59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2세)는 2004년경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인 피고(여, 51세)를 소개받아 2004년 4월

경 혼인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 되었고, 16년간 장기간 별거상태이다.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적 없이 연락두절 중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에서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은 결과 피고는 2004년 11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약 4년간 한국에 체류하였던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4년간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점, 피고가 주소지를 원고의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 모르게 한국에 입국하였음을 주장하였고, 또한 피고를 찾자 지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의 중국 주소지를 가보게 하였던 점을 증명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가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 없이 연락두절 하여서 장기간 별거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여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7.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이영임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장애와 지병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98

담당 : 이정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9세)은 지체장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수급비 월 평균 50만 원에 의존한 채 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중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나 홈쇼핑을 통해 전기레인지를 렌탈하였다. 또한 제휴카드를 통해 침대와 비데까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 역시 신청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몇 개월 간 사용을 하며 카드대금을 조금씩 나눠 변제하였는데, 월 평균 50만 원의 소득만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지체장애와 더불어 10여 년이 넘도록 만성 심방세동,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8. 26.)

채무자를 면책한다.

명의도용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99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9세)은 혼인 후 자녀 넷을 두었으나 배우자의 무리한 사업, 잦은 외도로 갈등을 겪다 2019년 12월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혼인생활 중 배우자는 신청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가정주부였던 신청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런 일을 벌인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배우자는 사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지 않자 사업을 포기하여 부동산 2건 모두 경매 처분 되었다. 신청인은 배당 후 신청인 명의의 잔존채무에 대해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고 변제하라고 요청했으나 배우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결국 아무런 변제능력이 없던 신청인은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현재 신청인은 건강상 문제와 사고를 당한 자녀의 병간호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던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8. 20.)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